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

충청북도의회
정책복지위원회

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: 2021년 1월 11일
- 회부일자: 2021년 1월 13일

3. 제안이유

-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및 「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10조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하여 ‘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’을 설치·운영하고자 하며,
-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경험과 전문성이 확보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5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위탁대상: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
 - 시설위치: 수탁기관 내
 - 위탁기간: 위탁개시일로부터 3년간
 - 위탁방법: 공개모집
 - 사업비: 2021년도 330,000천원
- ※ 매년 국고보조금 확정내역에 따라 사업비 편성(변동 가능)

○ 수탁기관: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*

*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

1. 「국립대학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국립대학병원
2. 「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
3. 「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
4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
5.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른 대한적십자사
6. 「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」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
7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
8. 「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
9. 「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
10.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의료원
11. 「암관리법」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
12.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

○ 위탁주요사무

-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
-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
- 의료인력 DB구축을 통한 의료취약지 인력 지원
-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종사자 교육·훈련
- 공공보건의료 자원, 실적 통계관리 및 모니터링
- 공공의료기관 운영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
-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지원
-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보건의료 사업 발굴
- 충북도민 교육 프로그램, 연구조사 등을 통한 도민 참여 기반 구축
-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주희)

○ 법적근거

- 본 동의안은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2조, 「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10조,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에 따른 사항이며,
- 동 시설의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해서는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동의안의 법적 제출 절차는 적절함.

○ 종합의견

-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술적 지원 및 의료 자원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
- ‘의료’ 라는 특수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며, 민간의 축적된 전문지식이나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하므로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10조에 근거하여 전문의료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.
- 전문의료기관 민간위탁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, 도민의 보편적 건강권 보장과 의료서비스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등의 효과가 기대됨.
- 다만, 민간위탁기관이 지자체의 업무 지원은 물론 공공의료의 싱크탱크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역할을 위탁기관 선정 시 명확히 해야 할 것이며,
- 민간위탁 기간(3년)이 정해진 탓에 우수인력 채용이나 업무의 연속성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, 수탁자 선정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,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임.

□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

제22조(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·운영) ① 시·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, 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□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조(공공단체의 범위)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 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"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.

1. 「국립대학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국립대학병원
2. 「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
3. 「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
4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
5.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른 대한적십자사
6. 「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」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
7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
8. 「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
9. 「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
10.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의료원
11. 「암관리법」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
12.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

□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2조(설치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·기술적 지원 및 의료 자원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제10조(위탁운영) ① 도지사는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·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른다.

□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
5. 그밖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무

제4조의2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

참고 2

타 시·도 지원단 설치 및 운영현황

< 타 시·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현황 >

【설치 12】 서울, 부산, 대구, 인천, 광주, 대전, 울산, 경기, 강원, 전남, 경남, 제주

【예정 2】 '21년도 충북, 경북

(2020.12월 현재)

| 구분 | 서울 (재단) | 부산 | 대구 | 인천 | 광주 | 대전 |
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설치일 | '12. 7. | '15.12. | '20. 7. (20.신규) | '13. 8. | '20. 5. (20.신규) | '20. 5. (20.신규) |
| 위탁기관 | 서울공공보건 재단 | 부산의료원 | 경북대학교병원 | 인천광역시 의료원 | 전남대학교병원 | 충남대학교병원 |
| '20.예산 | 39억 | 11.5억 | 3억 | 6억 | 3억 | 3.8억 |
| 인력 | 28명 | 13명 | 6명 | 9명 | 5명 | 6명 |

| 구분 | 울산 | 경기 | 강원 | 전남 | 경남 | 제주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설치일 | '20.10. (20.신규) | '17. 3. | '19. 5. | '19.10. | '19. 6. | '17. 4. |
| 위탁기관 | 울산대학교병원 | 분당서울대병원 | 강원대학교병원 | 직영 | 경상대학교병원 | 제주대학교병원 |
| '20.예산 | 1.5억 | 12.7억 | 6억 | 4.8억 | 10억 | 5억 |
| 인력 | 5명 | 11명 | 6명 | 5명 | 8명 | 6명 |